

공제조합 규정개정 업무 안내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에서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증리스크 감소로 조합의 손실을 절감하고 조합원사 여러분의 이익 환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증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5. 1. 1 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증관리규칙 붙임 1. 위험관리 중 ⑥~⑦항목 및 담보규칙 시행일 : 2014.12.8)

주요 개정 내용은 조합 사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의, 집중관리, 위험관리’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및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부

실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보 제공에 의한 보증 거래시 담보물의 종류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조합원사 여러분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거래 지점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조합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보증관리규칙 개정내용 요약

□ 관심대상 업체선정 및 업무처리 기준

1. 주의 업체 : 단기간 내에 채권침해의 가능성은 낮지만, 장래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주요내용	업무처리 기준
① 자재공급업체, 보증채권자, 업계, 지역어른, 입찰정보 등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저가수주, 자금 악화설 등 악성루머 인지 ② 하자보수 불이행 (6개월 내 3건 이상 발생) ③ 시공능력초과 보증서 발급 ④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⑤ 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단, 발행후 3개월 경과 시 해제 ※과태료 중 건설공사대상 미통보 또는 50만원 이하 부과 제외 ⑥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경상 이익이 감소한 경우 ⑦ 신용정보사 등이 제공한 신용 정보를 활용하여 이사장이 “주의”로 정한 사항 ⑧ 법인 및 대표자의 재산 전무 ⑨ 기타 리스크관리부장 또는 지점장이 주의대상이라고 판단한 사항	○ 선정기준 중 3개 항목에 해당 되거나, 수집된 정보의 확인결과 부실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이 2억원 이상의 보증 (입찰, 하자제외)을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지점장이 판단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담보 징구 - 계약보증 : 보증금의 10% 이상 - 선급금 및 지급·기타보증 : 보증금액의 20%이상

2. 집중관리 업체 : 단기 또는 중기에 채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주요내용	업무처리 기준
<p>① 자재공급업체, 보증채권자, 업계, 지역여론, 입찰정보 등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저가수주과다, 자금악화설 등의 악성루머가 지속·반복되거나 중첩적으로 인지된 경우</p> <p>② 보증채권자의 부실징후 정보 수집시 당해 보증채권자로부터 수주금액이 많은 협력업체(당해 보증채권자의 계약보증 잔액이 총계약 보증잔액의 30% 이상인 경우)</p> <p>③ 조합원사 대표자 변경 (1년간 2회 이상)</p> <p>④ 3개월 이상 융자금이자 미납</p> <p>⑤ 공사수주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1년간 50% 이상 감소)</p> <p>⑥ 과거 업무거래 정지·중지조합원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p> <p>⑦ 공사포기(계약불이행)발생</p> <p>⑧ 신용정보사 등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이사장이 "집중관리"로 정한 사항</p> <p>⑨ 신용평가 제출 자료 중 다음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보상비율 0% 미만 <li style="margin-left: 20px;">$\frac{\text{경상이익} + \text{이자비용}}{\text{이자비용}} \times 100$ ○ 차입금 대비 매출액 비율 50% 이상 <li style="margin-left: 20px;">$\frac{(\text{전기차입금} + \text{당기차입금}) / 2}{\text{매출액}} \times 100$ ○ 순자산 대비 매출액 20배 이상 <li style="margin-left: 20px;">$\frac{\text{매출액}}{\text{순자산(자본)}}$ <p>⑩ 기타 리스크관리부장 또는 지점장이 집중관리대상이라고 판단된 사항</p>	<p>○ 선정기준 중 3개 항목(주의항목 포함)이상에 해당 되거나, 수집된 정보의 확인결과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이 2억원 이상의 보증(입찰, 하자 제외)을 신청한 경우 ⑨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의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함</p> <p>다만, 지점장이 판단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담보 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 : 보증금의 20% 이상 - 선급금 및 지급·기타보증 : 보증 금액의 30% 이상 <p>○ 선정기준 ⑨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점장이 별도 관리 함</p>

3. 위험관리 업체 : 단기간내에 채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주요내용	업무처리 기준
<p>① 조합 업무거래 정지·중지 조합원</p> <p>② 보증업무규칙에 따라 보증제한 업체</p> <p>③ 신용정보사 등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이사장이 "위험관리"로 정한 사항</p> <p>④ 업계, 지역여론, 자재공급상, 보증채권자 등으로부터 입수된 저가수주과다, 자금악화설 등 악성루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신한 경우(확신한 경우란 3군데 이상 정보처에서 입수된 정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p> <p>⑤ 출자죄수 200좌 이하 조합원이 1년 이내에 5배이상 증가한 경우</p> <p>⑥ 조합원 또는 연대보증인의 1차 어음부도 발생 후 6개월 미경과</p> <p>⑦ 체납된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원체 후 6개월 미경과</p>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④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증제한 - ⑤~⑦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이상 6개월간 보증 제한(입찰·하자 제외) <p>다만, 아래 담보 제공시 보증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항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보증금액의 30% 이상 · 선급금보증 및 지급·기타보증 : 보증금액 40% 이상 - ⑥~⑦항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액의 100% 이상 <p>○ 선정기준 중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지점장이 판단하여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담보 징구</p>

※ 위험관리 중 ⑥~⑦항목 시행일 : 2014.12.8.

□ 보증서 발급시 서류 징구 : 납세증명서

구 분	적용대상	개 정 내 용
계약보증	조합원 (전체)	보증금액이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

2 담보규칙 개정내용 요약

보증 발급 시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예금, 적금 등으로 한정하던 담보물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조합원사 여러분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담보물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담보의 종류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설기계
담보물의 거래한도	건설기계 감정평가 기준액의 50% 이내
담보물의 저장설정	거래한도액의 120% 근저당 설정

※ 시행일 : 2014.12.8.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붙임 1. 건설기계명(세부 범위 생략)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콘크리트 펌프	22. 천공기
2. 굴삭기	9. 롤 러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3. 항타 및 항발기
3. 로 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피니셔	24. 사리채취기
4. 지게차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8. 아스팔트살포기	25. 준설선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골재살포기	26. 특수건설기계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 살포기	20. 쇄석기	27. 타워크레인
7. 기중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1. 공기압축기	

건설업무용 프로그램 임대 서비스

우리조합은 건설업무프로그램 임대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사가 건설업무용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사용 시에 시중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공급(약33~71%, 평균 50% 할인)하여, 조합원사에 실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추진경위

(1) 현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 H/W중심의 투자로 인하여 사내 경영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S/W는 부재하고 이는 총투 자금액에 비해 그 효과는 실망스런 상황
- 건설 S/W 용역회사에 의뢰, ERP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들의 (경영자, 담당자 등) 지나친 의욕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범위보다 더 복잡, 다양 하게 개발되어 운영상 어려움 등 비효율적인 결과 초래
- 건설사의 경영환경에 비추어 자체 전산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이는 H/W, S/W 활용 및 관리를 어렵게 함

(2) ASP시스템 사용시 이점

- 주기적인 사용자교육, 시스템 장애처리, 문제 발생시 고객지원
- 중소기업업체 전산화는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기 보다는 전산실 위탁운영, 시설 및 S/W임대(ASP)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임

나. 시스템 구성

(1) 경영자정보

각 업무별 통합화를 통해 자료의 집계 및 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전달을 지원합니다.

(2) 공사관리

도급 및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기성 및 각 비목별 원가를 투입 예산대비 손익을 관리하며, 공사원가 및 각종 집계, 분석자료를 통해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재관리

프로젝트(발주공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진행관리를 통해 입찰 업무를 지원합니다.

(4) 노무관리

노무관리의 전산화로 인한 인력 누수 방지/현장별 투입인원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체계적인 관리로 소요시간의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킵니다. 일일출력의 전산화로 정확한 노임산출 및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외주관리

협력업체 일반정보, 계약대비 기성관리를 통하여 손익 분석 및 초과 발생 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장비관리

현장 보유 장비현황 및 장비이동 상세관리로 장비투입비용산출이 가능하고, 현황정보 공유로 인한 고가장비의 운용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7) 현장경비관리

현장 시스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합니다.

(8) 영업관리

프로젝트(발주공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진행관리를 통해 입찰 업무를 지원합니다.

(9) 품질안전관리

협력업체 일반정보, 계약대비 기성관리를 통하

여 손익분석 및 초과발생 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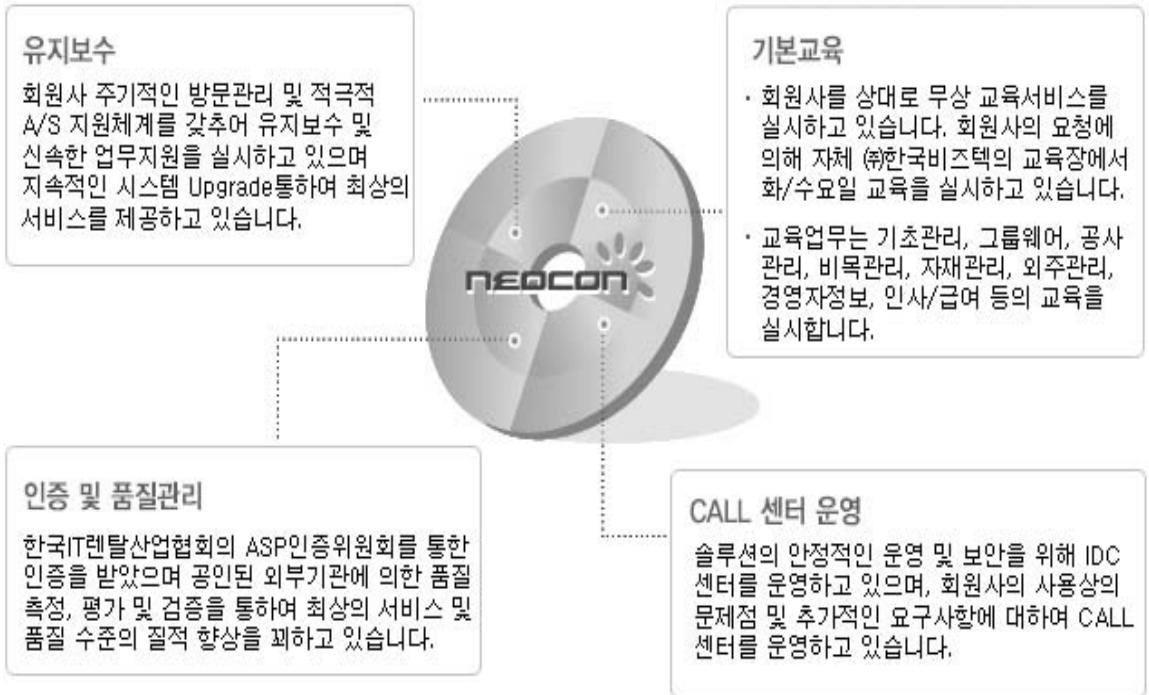
(10) 전자우편/결제

전자결재, 문서관리,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직내의 정보전달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결재완료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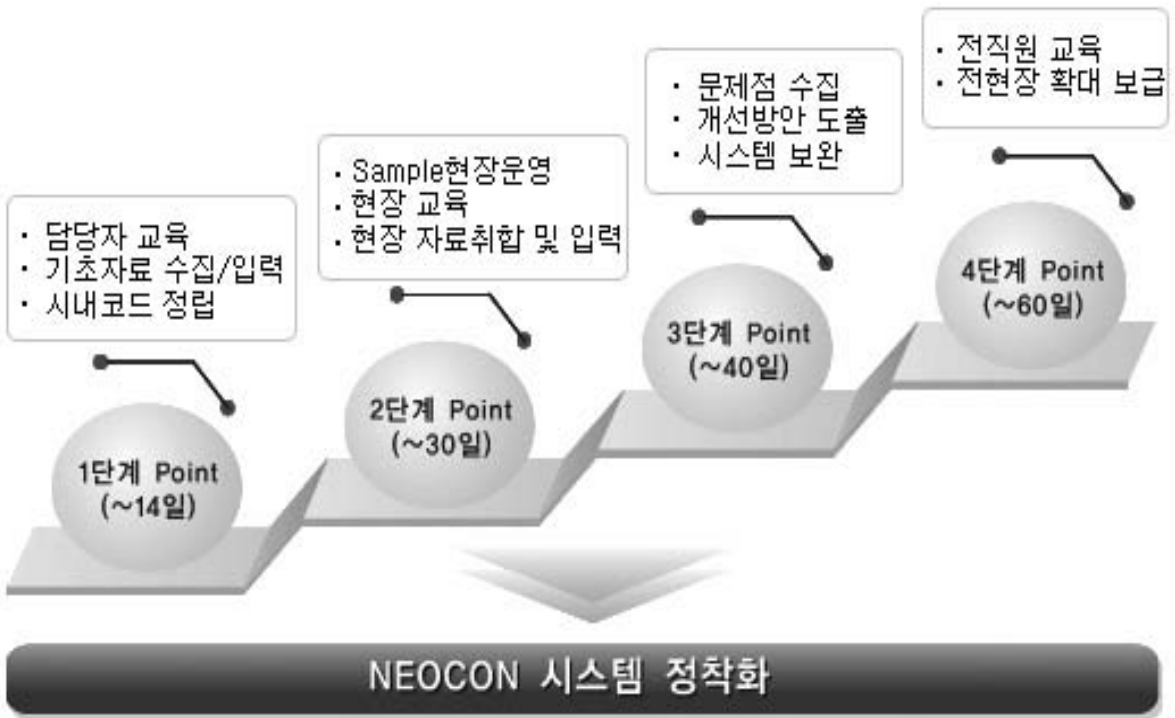
(11) 인사/급여

개개인의 이력(신상, 발령, 면허, 경력, 학력)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인력관리에 도움을 기하고 특정 인력 필요 시 적절한 이력소지 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령사항과 연동하여 급여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퇴직정산 등을 처리합니다.

다. 고객지원



라. 도입전략



마. 이용방법

(1) **협약업체** : (주)한국비즈텍

(2) 제품개요

빌려쓰는 건설정보시스템인 “네오콘(NEOCON)”은 건설사업부 전부분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건설정보시스템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초기 투자비와 구축시간을 줄이고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편리하고 빠르게 e-비즈니스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지원합니다.

(3) 이용방법

- ① 조합 사이버지점 (www.seolbi.com)
- ⇒ ②조합원지원서비스 메뉴 ⇒ ③ 빌려쓰는

건설업무 ⇒ ④ 상담신청 아이콘 클릭 ⇒ ⑤ 상담신청

※ 상담신청이 되면 협력업체에서 전화로 내용을 확인 상담을 거쳐 프로그램 임대 계약체결 후 사용

(4) 문의처

- 조합 지점 및 영업소
- 본부 기획부 정보지원팀
☎02-6240-1041~1044
- (주)한국비즈텍 ☎02-572-2243

(5) 기타

- 건설업무 프로그램 기능 설명 및 월임대료 가격표 다운로드(조합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2014년 연말정산관련 세법개정사항 등 안내

1.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분야)

구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표구간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3억원</td> <td>3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표구간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1.5억원</td> <td>35%</td> </tr> <tr> <td>1.5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 <td>50%</td> </tr> <tr> <td>1,500~3,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3,000~4,500만원 이하</td> <td>10%</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5%</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70%</td> </tr> <tr> <td>500~1,500만원 이하</td> <td>40%</td> </tr> <tr> <td>1,500~4,5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500~1억원 이하</td> <td>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부금 : 3년 지정기부금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부금 : 5년 (좌동)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관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기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구분	2013년	2014년
	<p>(한 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p>	<p>○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과 중복공제 가능</p>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p>○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p>	<p>○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p>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p>○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p>	<p>○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p>
월세 소득공제	<p>○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p> <p>○ 소득공제율 : 50%</p> <p>○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p> <p>○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p>	<p>○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 조정 - (좌동)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하는 소득공제 적용배제</p> <p>○ 소득공제율 : 60%</p> <p>○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p> <p>○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p>○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 <추가></p> <p>-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p> <p>○ 주택규모 기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p> <p>○ 기준시가 기준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p> <p>○ 공제배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p>	<p>○ 소득공제 대상자 - (좌 동)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체주택 취득자 (단, 12.31. 기준 1주택자) - (좌 동)</p> <p>○ 주택규모 기준 : <삭 제></p> <p>○ 기준시가 기준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p> <p>○ 공제배제 - (좌 동) - <삭 제></p>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p>○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p> <p>*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30%</p>	<p>○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0~63만원*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p>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p><신 설></p>	<p>○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p>

구분	2013년	2014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등)
사인가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가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가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 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정치자금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구분	2013년	2014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재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종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스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스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I.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등	○	×	
추가 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추가 공제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60% (연 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차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③+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 · 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 · 30%(2014년) : 벤처조합 · 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년 이전 투자</td> <td>소득금액의 40%</td> </tr> <tr> <td>'14년 이후 투자</td> <td>소득금액의 5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나이에 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 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63만원, 66만원) 한도	<table border="1"> <tr> <td>산출세액</td> <td>공제금액</td> </tr> <tr> <td>5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50만원 초과</td> <td>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able> <p><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p>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특별 세 액 공 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 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 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 의료비 공제대상금 액 · 본인, 65세이상, 장 애인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의료비 공제금액</td> </tr> <tr> <td>㉡ < 총급여액 3%</td> <td>(㉠+㉡+㉢) - (총급여액 3% - ㉣)</td> </tr> <tr> <td>㉡ >= 총급여액 3%</td> <td>(㉠+㉡+㉢) + 적은금액 [(㉡-총급여액 3%), 700만원]</td> </tr> </table> <p>※㉡,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에 해당되어야 함</p>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 [(㉡-총급여액 3%), 700만원]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 [(㉡-총급여액 3%), 700만원]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 · 한도	공제요건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 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 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0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 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